

1. 개정이유

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의 명칭이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으로 각각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을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으로 각 변경

나. “검찰사무관등”(검찰사무관·검찰주사·검찰주사보·검찰서기·검찰서기보 등)은 공소청 직원 또는 5급부터 9급까지의 직원으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광역공소청 검사의 지방공소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검찰청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고등검찰청”을 “「공소청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광역공소청”으로,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2조 중 “고등검찰청 검사”를 “광역공소청 검사”로,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고등검찰청 지부”를 “광역공소청 지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고등검찰청 지부”를 “광역공소청 지부”로, “고등검찰청 각”을 “광역공소청 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고등검찰청의 검찰사무관·검찰주사·검찰주사보·검찰서기·검찰서기보 등(이하 “검찰사무관등”이라 한다)”을 “광역공소청장은 광역공소청의 5급부터 9급까지의 직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장은 광역공소청”으로, “지방검

찰청 소속 검찰사무관등”을 “지방공소청 소속 5급부터 9급까지의 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검찰사무관등”을 “5급부터 9급까지의 직원”으로,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검찰사무관등의 평정)”을 “(공소청 직원의 평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고등검찰청 소속 검찰사무관등”을 “광역공소청 소속 5급부터 9급까지의 직원”으로, “고등검찰청 총무과장”을 “광역공소청 총무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주사 이하의 검찰사무직”을 “6급 이하의 형사법무직”으로, “과 분실의 선임 검찰사무관등”을 “제3조제4항 기재 과 분실 선임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검찰청 소속 검찰사무관등”을 “지방공소청 소속 5급부터 9급까지의 직원”으로, “지방검찰청에서”를 “지방공소청에서”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사건의 접수) 광역공소청 지부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은 해당 광역공소청 지부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제6조 중 “고등검찰청에”를 “광역공소청에”로, “고등검찰청 지부”를 “광역공소청 지부”로 한다.

제7조 중 “고등검찰청 지부”를 “광역공소청 지부”로, “고등검찰청과”를 “광역공소청과”로 한다.

제8조 중 “고등검찰청 지부에”를 “광역공소청 지부에”로, “고등검찰청 지부의”를 “광역공소청 지부의”로 한다.

제9조 중 “고등검찰청 지부와 지방검찰청”을 “광역공소청 지부와 지방

공소청”으로, “지방검찰청에서”를 “지방공소청에서”로 한다.

제10조 전단 중 “고등검찰청 지부와 지방검찰청”을 “광역공소청 지부와 지방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u>	<u>광역공소청 검사의 지방공소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u>
제1조(목적) 이 규칙은 「<u>검찰청 법</u>」 제19조제2항에 따라 <u>고등 검찰청</u> 검사가 그 관할구역의 <u>지방검찰청</u> 소재지에서 수행하 는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院外裁判部)에 대응하기 위하 여 <u>고등검찰청</u> 검사가 그 관할 구역의 <u>지방검찰청</u> 소재지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부서의 명칭을 <u>고등검찰청 지부</u>(支部) 로 하고, 명칭 중간에 해당 소재 지의 지명(地名)을 넣는다. 제3조(과 분실) ① <u>고등검찰청</u> 지 부에서 접수하는 사건의 접수· 처리, 기록·문서·장부의 작성 ·처리·보존, 그 밖의 관련 사 무의 처리를 위하여 소속 <u>고등</u>	제1조(목적) ----- 「<u>공소청 법</u>」 제19조제2항에 따라 <u>광역 공소청</u> ----- <u>지방공소청</u> ----- -----. 제2조(명칭) ----- ----- -- <u>광역공소청</u> <u>검사</u>----- ---- <u>지방공소청</u> ----- ----- ---- <u>광역공소청</u> <u>지부</u>----- ----- -----. 제3조(과 분실) ① <u>광역공소청</u> 지 부----- ----- ----- ----- <u>광역</u>

검찰청 각 과에 분실(分室)(이하 “과 분실”이라 한다)을 두되,
이를 통합하여 운영한다.

②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고등검찰청의
검찰사무관·검찰주사·검찰주사보·검찰서기·검찰서기보 등(이하 “검찰사무관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과 분실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고등검찰청 지부 소재지의 지방검찰청 소속 검찰사무관등으로 하여금
과 분실에서 겸임근무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과 분실에서 근무하는 검찰사무관등 중 선임자(先任者)는
과 분실의 사무에 관하여 소속 고등검찰청 각 과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4조(검찰사무관등의 평정) ① 과 분실에서 근무하는 고등검찰청 소속 검찰사무관등에 대한
평정은 소속 고등검찰청 총무과장이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검찰주사 이하의 검찰사무직에 대한 평정은

공소청 각 -----

-----.

② 광역공소청장은 광역공소청의 5급부터 9급까지의 직원---

-----.

③ 광역공소청장은 광역공소청
----- 지방공소청
소속 5급부터 9급까지의 직원---

-----.

④ ----- 5급부터 9급까지의 직원 -----

광역공소청 -----
-----.

제4조(공소청 직원의 평정) ① --
----- 광역공소청 소속 5급부터 9급까지의 직원----- 광역공소청 총무과장-----.

② ----- 6급 이하의 형사법무직-----

과 분실의 선임 검찰사무관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3조제3항에 따라 과 분실
에서 근무하는 지방검찰청 소속
검찰사무관등에 대한 평정은 소
속 지방검찰청에서 한다.

제5조(사건의 접수) ① 고등검찰
청 지부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
은 해당 고등검찰청 지부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고등검찰청 지부에서 처리하
는 것이 적절한 사건에 대해서
는 다른 검찰청에서 해당 고등
검찰청 지부로 직접 송치할 수
있다.

제6조(진행번호) 제5조제1항에 따
라 사건을 접수하는 경우에 진
행번호는 소속 고등검찰청에 접
수되는 사건의 번호와 독립하여
부여하되, 진행번호의 앞에 괄
호를 하고 그 안에 고등검찰청
지부의 명칭 중 지명 부분을 기
재한다.

제7조(장부의 작성 및 비치) 고등
검찰청 지부에서 처리하는 사건
및 사무에 관한 장부는 소속 고

제3조제4항 기재 과 분실 선임
자-----.

③ -----
----- 지방공소청 소속
5급부터 9급까지의 직원-----
-- 지방공소청에서 --.

제5조(사건의 접수) 광역공소청
지부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은
해당 광역공소청 지부에서 접수
할 수 있다.

제6조(진행번호) -----

----- 광역공소청에 ---

----- 광역공소청
지부-----
-----.

제7조(장부의 작성 및 비치) 광역
공소청 지부-----
----- 광

등검찰청과 별도로 작성하여 갖
추어 두어야 한다.

제8조(기록 등의 보존) 고등검찰
청 지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처리한 재판사
건의 재판서와 그 밖에 고등검
찰청 지부의 장부 등의 보존은
과 분실에서 한다.

제9조(청사 관리) 고등검찰청 지
부와 지방검찰청이 동일한 청사
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검찰청에서 청사를 관리한
다.

제10조(당직실 운영) 고등검찰청
지부와 지방검찰청이 동일한 청
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직실
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당직
근무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

역공소청과 -----
-----.

제8조(기록 등의 보존) 광역공소
청 지부에 -----

----- 광역공
소청 지부의 -----
-----.

제9조(청사 관리) 광역공소청 지
부와 지방공소청-----

지방공소청에서 -----
--.

제10조(당직실 운영) 광역공소청
지부와 지방공소청-----

-----, --
--- 지방공소청장-----
-----.